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가단513859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16. 11. 16.

판결 선고2016. 12. 2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03,903원 및 그 중 20,603,891원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2015. 8. 18.자 매매계약을

20,603,903원 및 그 중 20,603,891원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20,603,903원 및 그 중 20,603,891원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2014. 8.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과 피고 A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22,500,000원, 보증기한을 2018. 7. 18.로 정하여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우리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모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우리은행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4. 8. 18. 피고 A에 경기도 육성자금지원금 25,000,000원을 대출하였다.

(3) 피고 A은 2016. 2. 19.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우리은행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원고는 2016. 6. 1. 피고 A을 대위하여 우리은행에 위 대출 원리금 20,640,631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36,74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함으로써,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보유한 구상금 채권은 위 대위변제 원금 잔액 20,603,891원(= 20,640,631원 - 36,740원)과 위

회수한 36,740원에 대한 확정손해금 12원(= 36,740원 × 연 12% × 1/366일, 원 미만 버림)이다.

(5)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A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나.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등

피고 B은 2016. 8. 18. 제수인 피고 C와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1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6. 9. 4. 접수 제16546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피고 B은 원고에게 구상금 20,603,903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원금 잔액 20,603,89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6. 1.부터 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8. 17.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이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제수인 피고 C에게 매각한 사해행위이므로 "20,603,903원 및 그 중 20,603,891원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한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B이 2016. 2. 19.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그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 B의 무자력 갑 제11, 12호증의 기재, 감정인 D의 시가감정 결과, 이 법원의 국민은행 양주테크노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15. 8. 18. 피고 B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11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2015. 8. 18. 무렵 피고 B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 외에도 남지농협에 대한 8,000,000원, 신태인농협에 대한 5,712,000원, 국민카드에 대한 30,623,000원, E에 대한 20,715,000원, 국민은행에 대한 57,166,678원의 채무 등 합계 142,820,581원 상당에 이르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인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 즉 무자력 상태에 처하여 있었음이 인정된다.

3) 사해의사의 추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 B이 그 소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피고 B과 수익자인 피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4)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1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약 60,000,000원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은행 대출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정상적인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피고 C는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그런데 을가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 시세는

110,000,000원으로서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가격과 일치하는 점, ② 피고 C가 피고 B의 제수이기는 하나 피고 B의 채무나 신용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 C는 위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을 피고 B의 농협 통장 계좌로 직접 송금한 점, ④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승계한 국민은행 대출금을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7,000,000원을 대출받아 변제한 점, ⑤ 피고 C는 2015. 4. 30.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때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실제로 위 매매대금이 수수되었으며 피고 C가 그에 대한 객관적 금융자료도 제출한 점, ⑥ 피고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C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부상준

별지